

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09 ~
----------	--------

제출연월일	2009. 5. .
제 출 자	거창군수

1. 개정이유

- 「수도법」 개정과 상수도 분야의 민원해소를 위한 표준 급수조례 보급에 맞추어 급수공사의 비용부담 구분, 수돗물 공급조건, 상수도요금 및 사용수량 산정, 급수설비의 관리 등 상수도 급수관리와 관련된 제도 개선으로 사용자의 불편 해소 및 경제적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순화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정하고자 하는 상수도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용의 부담 구분 및 그 밖에 수돗물의 공급조건 등 급수관리에 관한 근거를 명확히 제시함(안 제1조).

- 「수도법」 제38조(수돗물 공급규정)
-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제139조(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
- 「지방공기업법」 제22조(지방직영기업의 급부에 대한 요금 징수)

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관계법령에 맞게 변경, 삭제 및 신설함(안 제2조).

- “급수장치”를 “급수설비”로 변경
- 하수도조례 전부개정 시(2008.6.3) “중수도시설” 관련 조항(제38조, 제39조)을 부칙에서 삭제함에 따라 이에 대한 용어를 삭제
- “구경별 기본요금”, “시설분담금”, “공업용수”, “호”에 대한 용어 신설

다.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단지 안 상가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로서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건축주 또는 전체 입주자의 설치신청이 있을 경우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2 신설).

- 주 계량기 및 세대별 계량기를 단지 안 공지에 설치하되, 세대별 계량기는 각 세대 출입문 외벽에 설치 가능
- 세대별 계량기의 시설분담금은 주 계량기 설치 시 납부하되,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대별로 분담금을 공사비와 같이 납부하여야 함
-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는 경우 급수설비의 관리는 군에서는 계량기만을, 주 계량기 다음의 배관은 수용가가 관리함

라. 급수공사 시행과 관련하여 군수가 직접 시공할 수 없는 경우 위탁하여 시공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공사 착공 및 준공검사 시 구두 또는 전화로 보고하던 사항을 문서로 통보·신청하도록 하며, 급수공사 대행업자의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
(안 제8조, 제9조, 제10조).

- 위탁시공을 할 수 있는 자 : 군수가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 뿐만아니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하수도설비공사업자를 추가
- 급수공사 대행업자의 지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거창군 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명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행업자 자격 등 중복되는 내용을 정리함

마. 급수공사 비용의 부담 주체를 명확히 구분하고, 마을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포함)를 지방상수도로 전환할 경우 급수공사비를 군에서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주민부담을 완화하는 등의 관련 규정을 신설함
(안 제11조).

바. 급수공사비를 산정할 경우에는 설계에 따른 실액제로 하되,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별도 고시하도록 변경함에 따라 급수공사비 항목에도 설계 수수료를 포함하도록 규정함(안 제12조).

사. 급수공사비의 선납과 정산 환급 및 분할 납부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선함(안 제13조).

-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 내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봄

- 선납된 공사비는 준공 후 정산하며 과부족이 있을 경우 환불 또는 추징하되, 미납된 상수도요금 및 다음 달의 상수도요금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가정용 수도전의 경우 공사비를 6개월의 범위 내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함

아. 수돗물의 판매금지 조항은 「수도법」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에서 정할 필요가 없어 삭제함(안 제20조).

자. 상수도사용자 등에게 부가하는 불합리한 책임의무 조항을 삭제 또는 개선함(안 제22조제4항, 제23조)

- 상수도사용자 등의 가족의 행위에 대한 책임의무 조항을 삭제함
-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 변동 시 상수도요금은 기존 사용자와 신규 사용자가 정산하도록 함(경매, 공매처분에 따른 명의변경 시 제외)

차. 상수도계량기 이상 등으로 군수가 인정계량하는 사항 외에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 사용수량 산정기준을 신설함(안 제30조제2항, 제3항, 제4항 신설).

- 단일계량기로 2가구 이상이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구 수로 나눈 평균량
- 세대구성이 되지 않은 기숙사, 사회복지수용시설의 사용량
→ 거주하는 방 수로 나눈 평균량
- 단일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
→ 총사용량 중 가구당 월 15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우선 적용, 남은 수량은 다른 업종으로 적용

카. 계량기의 이상 시험결과 사용자의 책임이 없을 경우 시험비용은 군수가 부담하도록 하고, 상수도 사용수량 정정을 위한 계량기 시험 오차 범위를 「계량에 관한 법률」상의 사용공차 범위에 부합하도록 개선함(안 제31조).

- 100분의 8 → 「계량에 관한 법률」상의 사용공차 범위

타. 누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제도를 신설하고, 부정급수에 대한 포상금 지급시기를 명확히 함(안 제43조).

-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자 : 1건당 3만원에 상응하는 상품권
- 부정급수의 적발 또는 제보에 대한 포상금은 해당 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에 따라 확정된 후 지급

파. 상수도요금 등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한 이의신청 기간을 「지방자치법」과 형평에 맞게 조정하고,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 기준을 신설함(안 제49조).

- 상수도요금 및 그 밖에 납부금의 이의신청 : 60일 내 → 90일 내
- 과태료의 이의신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름

하. 상수도요금 및 수수료와 이 외의 징수금(가산금 등)에 대한 소멸시효 규정을 신설함(안 제50조의2 신설)

- 상수도요금 및 수수료 :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
- 가산금 등 그 밖에 징수금 :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5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 「지방자치법」 제136조부터 제140조까지, 「지방공기업법」 제22조
-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30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1조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 「민법」 제163조, 「지방재정법」 제82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라. 그 밖에

- 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 2) 입법예고(2009. 3. 20. ~ 2009. 4. 8.) 결과 : 특기사항 없음
-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수도법」 제23조의 규정”을 “「수도법」 제38조, 「지방자치법」 제136조, 같은 법 제139조제1항 및 「지방공기업법」 제22조”로, “급수장치”를 “급수설비”로 한다.

제2조 본문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제2호·제3호·제4호 및 제5호 중 “(이)라 함은”을 각각 “(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제2호·제3호 및 제5호 중 “급수장치”를 각각 “급수설비”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급수관”을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로, “기타”를 “그 밖”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일체의”를 “모든”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7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구경별 기본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상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상수도요금을 말한다.
8. “시설분담금”이란 정수장, 가압장 등 상수도시설에 소요된 건설비를 급수설비의 신설 또는 구경확대공사 등을 신청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분담금을 말한다.
9. “공업용수”란 정수장에서 1차 침전 처리한 용수를 말한다.
10. “호”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한다.

제3조 중 “공시”를 “고시”로, “이외”를 “외”로 한다.

제4조의 제목, 본문, 제1호 및 제3호 중 “급수장치”를 각각 “급수설비”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가구”를 “1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용 급수설비 :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제5조 본문 및 각 호 중 “급수장치”를 각각 “급수설비”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을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급수장치”를 “급수설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단서 및 제3항 중 “아니한다”를 각각 “않는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제4조제1호의 전용 급수설비에는 한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 혼용의 염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 계량이 가능할 경우에 건물주 또는 입주자의 개별신청에 따라 계량기를 호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①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다가구 주택, 공동주택 단지 안 상가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로서 세대별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건축주 또는 전체입주자의 설치 신청이 있을 경우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

② 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주 계량기 및 세대별 계량기를 단지 안 공지에 설치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는 각 세대 출입문 외부벽체의 상수도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③ 세대별 계량기의 시설분담금은 기존 주 계량기 설치 시 세대별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대별로 분담금을 공사비와 같이 납부하여야만 설치할 수 있다.

- ④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는 경우 급수설비의 관리는 군에서는 계량기만을 관리하며, 주 계량기 다음의 배관은 수용가가 관리한다.
- ⑤ 한 건물에 여러 업종 또는 동일업종이 한개의 수전으로 급수되고 있는 경우 또는 한 필지에 건물이 2동 이상 있는 경우 상수도사용자 등이 보조상수도계량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의 제목 중 “공용 급수장치”를 “공용 급수설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급수장치를”을 “급수설비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거”를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로 한다.

제8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정하여 공사를 위탁시공하게 할 수 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하수도 설비공사업자
2. 군수가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이하 "시공업자"라 한다)

제8조제2항, 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납부일로부터”를 “납부일부터”로, “7일이내”를 “7일 내”로, “대행업자 수탁공사의”를 “시공업자가 시공할”로, “3일이내”를 “3일 내”로,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②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품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급 자재의 범위는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에 있어서는 군수에게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 검사는 하지 않는다.

⑤ 시공업자는 착공을 군수에게 문서(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로 통보함과 동시에 관급자재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준공검사)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시공업자는 준공검사를 문서로 신청하고, 준공검사자는 신청자 입회 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검사 조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공업자로 하여금 준공검사원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8조제1항제2호의 시공업자는 미리 군수로부터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을 받은 자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중 “급수장치”를 “급수설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옥외(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로 한다) 시설의 공사비용(옥내시설물의 복구비를 포함한다)은 해당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 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철거공사와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 시의 공사비용은 군에서 부담한다.

②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상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에 따라 군의 소유로 한다.

③ 주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상수도사용자가 관리하고, 급수설비 수선 비용도 상수도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을 경우에는 건축물 경계까지의 급수설비는 군에서 관리하고, 옥내급수설비의 누수 등에 대하여는 상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④ 군수는 설치된 상수도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⑤ 원인자 부담으로 설치한 공업용 수도시설의 확장·교체 등에 따른 공사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⑥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포함)를 지방상수도로 전환할 경우에는 급수공사비를 군에서 부담한다. 다만, 급수시작 후 개인별로 급수 신청할 경우는 제외한다.

제12조제1항 중 “도로복구비, 준공검사 수수료”를 “도로복구비, 설계 수수료, 준공검사 수수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이외”를 “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급수공사비는 실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설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정액제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군수가 별도로 고시한다.

제13조제1항 본문 중 “급수공사의”를 “급수공사”로, “급수공사 신청자”를 “신청자”로, “지정기일내”를 “지정기일 내”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인정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인정하여 고시하는 공사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제13조제3항 본문 중 “준공후”를 “준공 후”로, “정산후”를 “정산 후”로, “이를 환불”을 “환급”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결정하는”을 “하는”으로,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그렇지 않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3항에 따른 환급금은 상수도사용자 등의 미납된 상수도요금 및 다음 달의 상수도요금에 충당할 수 있다.

⑥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대하여는 가정용 수도전의 경우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비를 6개월의 범위 내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제1항 중 “급수장치”를 각각 “급수설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가구”를 “2호”로, “가구별”을 “호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급수시설”을 각각 “급수설비”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1조제4항에 따라”로, “급수장치”를 “급수설비”로 한다.

제15조제3항 중 “특수가압시설의 설치에 있어서”를 “특수가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도로공사 등”을 “각종 공사”로, “기타 사유에 의하여”를 “그 밖의 사유로”로, “급수관 이설 및 급수관의 개조, 수선 또는 철거”를 “급수설비의 이설, 수선, 철거 및 손괴에 대한 복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공사비용, 누수와 배수량에 대한 요금 및 소요비용은 그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급수공사의 하자책임 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④ 제3항의 하자보증 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그 밖에 하자보수 보증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8조제1항 본문 중 “당해”를 “해당”으로, “급수장치”를 “급수설비”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그렇지 않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상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 본문 중 “있을 경우에는”을 “있으면”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제2호 및 제8호 중 “급수장치”를 각각 “급수설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중지”를 “중지 또는 폐전”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급수 종별을”을 “급수용도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업종이 공동으로”를 “업종을 같이”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제23조의 규정에 의해”를 “제23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급수 중단, 용도변경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0조를 삭제한다.

제21조제1항 중 “이외”를 “외”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미리”를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로 한다.

다만, 비상급수를 위하여 군수가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

제22조제1항 중 “급수장치”를 “급수설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태만히”를 “게을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② 상수도사용자 등은 상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점검 및 유지 관리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하거나 공작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23조의 제목 “급수장치의 권리의무”를 “상수도요금의 정산”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며, 제1항 중 “급수장치”를 “급수설비”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가 변동되는 경우 신규 상수도사용자와 기존의 상수도사용자 등은 상수도요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 공매처분에 따른 명의변경 시는 그렇지 않다.

제24조제1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인정하는 경우에는”을 “인정하면”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을 “제1항에 따른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한다.

이 경우 상수도사용자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3월 이내”를 “3개월 내”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을 “사유가 있으면”으로, “신청에 의거”를 “신청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분양되지 아니한”을 “분양되지 않은”으로, “가구”를 “호”로, “분양시 까지”를 “분양 시까지”로, “이를 연장한”을 “연장한”으로, “볼 수 있다”를 “본다”로 한다.

① 상수도사용자 등은 필요에 따라 군수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제2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할 경우에는”을 “해당하면”으로, “급수장치”를 “급수설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3월”을 “3개월”로, “소재 불명일”을 “소재가 분명하지 않을”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3월 이상”을 “3개월 이상”으로, “아니할”을 “않을”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2항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정호수”를 “지하수”로, “병용하는”을 “함께 사용하는”으로, “야기할 우려”를 “일으킬 염려”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급수설비의 손실이 예상되거나 손실되었을 경우

제25조제4항 중 “태만히”를 “게을리”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급수설비를 폐전하는 경우에는 분기된 급·배수관에서 완전 폐쇄하여 지하누수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

제27조제1항 본문·단서 및 제2항 중 “의한”을 각각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급수장치 손료”를 “기본요금”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따로 정한다”를 “관계기관과 따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급수 중지 또는 정수처분 중에 있는 급수전에 대하여는 구경별 기본 요금을 부과하되, 그 원인이 소멸된 후 최초로 요금을 부과할 때 한꺼번에 조정할 수 있다.

제28조제1항 본문 중 “별표 3에 의한”을 “별표 3의”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심히”를 “매우”로 한다.

제2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를 “제1항에도”로, “일괄”을 “한꺼번에”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이내”를 “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1가구”를 “1호”로, “장치”를 “설치”로 한다.

제30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단일계량기로 2가구 이상이 가정용 수도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 수로 나눈 평균량에 따라 산정한다.

③ 세대구성이 되지 않은 기숙사, 사회복지수용시설 등의 사용량은 거주하는 방 수로 나눈 평균량에 따라 산정한다.

④ 단일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8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사용량 중 가구당 월 15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우선 적용하고, 남은 수량은 다른 업종으로 적용한다.

제31조제2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100분의 8을”을 “「계량에 관한 법률」상의 사용공차 범위를”로, “당월분”을 “그 월분”으로, “환불”을 “환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시험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군수의 부담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단서 중 “급수장치”를 “급수설비”로, “경우에 있어서는”을 “경우에는”으로, “이를 징수할”을 “징수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제1항에도 불구하고”로 한다.

제33조의 제목·제1항 본문 및 제2항 중 “급수장치 손료”를 각각 “구경별 기본요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단서 중 “급수장치”를 “급수설비”로,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34조 중 “구경별 정액요금”을 “구경별 기본요금”으로, “상당”을 “해당”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지난 달분 미납금에 대하여는 미납액 누계를 해당 월분 납부고지서에 표시하고, 미납금에 대해서는 독촉고지서를 발급한다.

제37조제1항 중 “기타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의한”을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3월”을 “3개월”로,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1월 이내”를 “1개월 내”로 한다.

제38조의2제1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수도계량기별”을 “상수도계량기별”로 한다.

제4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0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① 군수는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 급수설비의 상태와 수질을 검사할 수 있고,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도 급수설비 상태와 공급받는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검사결과 급수설비가 노후화되었거나 수돗물이 수질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군수는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급수관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의 권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출수되는 경우
2.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의 별표 7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배관의 내부가 부식되어 수돗물의 탁도, pH, 색도, 수돗물에 함유된 철, 납, 구리, 아연이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제41조의 제목 “급수표시”를 “급수표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명기한”을 “명확하게 적은”으로, “교부”를 “발급”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부착하여야”를 “붙여야”로 한다.

제42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제7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급수정지 처분”을 각각 “정수처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급수를 정지”를 “급수를 정지(이하 “정수처분”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상수도요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거나, 수수료, 공사비, 그 밖에 이 조례에서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은 자

제42조제1항제4호 중 “상수도계량기”를 “상수도계량기(설치봉인 포함)”으로, “상수도요금의 포탈을 도모한”을 “상수도요금을 포탈하고자 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아니하고”를 “않고”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급수를 판매한 자”를 “급수를 판매한 자”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제19조의 규정에 따른”을 “제19조에 따른”으로, “태만히”를 “게을리”로, “허위로”를 “거짓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정수처분의 해제는 의무자의 신청에 따르되 정수처분의 원인이 종료된 후가 아니면 해제할 수 없다. 다만, 정수처분 해제 후 1개월 내에 원인 해소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43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 본문 중 “다음 각호”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범위내”를 “범위 안”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30퍼센트”를 “100분의 30”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상수도요금 과징제도”를 “상수도행정”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자 : 1건당 3만원에 상응하는 상품권

-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포상금은 해당 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에 따라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제44조 중 “당해”를 “해당”으로, “부담으로 한다”를 “부담으로 수리 또는 설치한다”로 한다.

제4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5조(과태료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별표 5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감할 수 있다.

제46조의 제목 중 “수도시설”을 “상수도시설”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수도법」 제53조 및 제54조의 규정에 의한”을 “「수도법」 제71조 및 제7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6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47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본문 중 “급수장치”를 각각 “급수설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아니하고”를 “않고”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도시계획사업 등”을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으로, “손실하게 될”을 “손실될”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를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4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8조(검침업무 등의 위탁) ① 군수는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상수도계량기의 검침·교체, 상수도요금 고지서의 발급·송달 업무 등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지원과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위탁에 관한 업무의 범위, 위탁수수료 산정, 업무처리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49조제1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60일 이내”를 “90일 내”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에는”을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부터”로, “이내”를 “내”로 한다.

다만,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제50조 중 “의한”을 “따른”으로, “기타”를 “그 밖에”로, “일체의”를 “모든”으로, “이외”를 “외”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5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2(소멸시효) 상수도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상수도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별표 1부터 별표 6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수량의 인정 적용례) 제30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승인·지정·신고 및 그 밖의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제4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군의 상수도요금과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 비용의 부담 구분 및 그 밖에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8조, 「지방자치법」 제136조, 같은 법 제139조 제1항 및 「지방공기업법」 제22조----- <u>급수설비</u>----- -----.</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급수장치</u>”라 함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u>급수관·계량기·저수조·수도전·기타의 급수에 관련된 기구</u>를 말한다. 2. “<u>급수공사</u>”라 함은 <u>급수장치</u>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u>흡수정 이하의 장치</u>”라 함은 <u>급수장치</u>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장치 등 일체의 <u>급수시설</u>을 말한다. 4. “<u>특수가압시설</u>”이라 함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5. “<u>상수도사용자 등</u>”이라 함은 <u>급수장치</u>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6. “<u>중수도시설</u>”이라 함은 사용한 수돗물을 <u>생활용수, 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처리 시설, 송·배수시설 및 이용시설의 총체</u>를 말한다. 	<p>제2조(정의) ----- 뜻은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급수설비</u>”란 ----- ----- ----- <u>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u>----- <u>그 밖</u>-----. 2. “<u>급수공사</u>”란 <u>급수설비</u>----- -----. 3. “<u>흡수정 이하의 장치</u>”란 <u>급수설비</u>----- ----- <u>모든</u> -----. 4. “<u>특수가압시설</u>”이란 ----- -----. 5. “<u>상수도사용자 등</u>”이란 <u>급수설비</u>----- -----. <p><삭 제></p>

현행	개정안
<p><신설></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7. “구경별 기본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상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상수도요금을 말한다.</p> <p>8. “시설분담금”이란 정수장, 가압장 등 상수도시설에 소요된 건설비를 급수설비의 신설 또는 구경확대공사 등을 신청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분담금을 말한다.</p> <p>9. “공업용수”란 정수장에서 1차 침전 처리한 용수를 말한다.</p> <p>10. “호”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한다.</p>
<p>제3조(급수구역) 급수구역은 <u>군의 관할 구역 중 군수가 공시한 급수가능구역</u>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할구역 <u>이외</u>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p>	<p>제3조(급수구역) ----- ----- <u>고시</u>----- ----- ----- <u>외</u> -----.</p>
<p>제4조(급수장치의 구분) 급수장치는 다음의 3종으로 구분한다.</p> <p>1. <u>전용 급수장치</u> : 1가구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p> <p>2. <u>공용 급수장치</u> : 5가구이상 영세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p> <p>3. <u>소화용 급수장치</u>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p>	<p>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 -----.</p> <p>1. <u>전용 급수설비</u> : 1<u>호</u>----- ----- 급수설비</p> <p>2. <u>공용 급수설비</u> :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p> <p>3. <u>소화용 급수설비</u> : ----- ----- 급수설비</p>

현행	개정안
<p>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u>급수장치</u>의 공사는 다음의 4종으로 구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설공사 : 상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운 <u>급수장치</u>를 설치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조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교체 등 <u>급수장치</u>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u>급수장치</u>의 부분적인 파손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u>급수장치</u>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p>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u>급수설비</u>-----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설공사 : ----- -- <u>급수설비</u>----- 2. 개조공사 : ----- ----- <u>급수설비</u>----- 3. 수선공사 : <u>급수설비</u>----- ----- 4. 철거공사 : <u>급수설비</u>----- -----
<p>제6조(급수공사의 승인)</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u>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u>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에 있어 급수공사 신청인은 설계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u>급수장치를 수선 또는 철거할 경우에는</u> 설계 수수료를 납부하지 <u>아니한다</u>. ③ 제2항에 의하여 납부된 설계 수수료는 반환하지 <u>아니한다</u>. ④ (생략) ⑤ 제1항의 신청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급수공사 승인을 분리할 수 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동일 택지내 각각 독립된 건축물로서 건축 소유주가 다른 경우 2. 업종이 다른 복합 건축물로서 옥내 배관이 업종별로 분리 설치되어 있어 분리 계량이 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분리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p>제6조(급수공사의 승인)</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u>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u>----- -----. ② ----- ----- --- <u>급수설비</u>----- -----<u>않는다</u>. ③ ----- <u>따라</u> ----- -----<u>않는다</u>. ④ (현행과 같음) ⑤ 제4조제1호의 전용 <u>급수설비에는</u> 한 개의 <u>급수설비를</u> 원칙으로 하되, <u>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 혼용의</u> 염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 계량이 가능할 경우에 건물주 또는 입주자의 개별신청에 따라 계량기를 가구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

현행	개정안
<p><신설></p>	<p>제6조의2(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p> <p>①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단지 안 상가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로서 세대별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건축주 또는 전체입주자의 설치신청이 있을 경우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p> <p>② 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주 계량기 및 세대별 계량기를 단지 안 공지에 설치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는 각 세대 출입문 외부벽체의 상수도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다.</p> <p>③ 세대별 계량기의 시설분담금은 기존 주 계량기 설치 시 세대별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대별로 분담금을 공사비와 같이 납부하여야만 설치할 수 있다.</p> <p>④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는 경우 급수설비의 관리는 군에서는 계량기만을 관리하며, 주 계량기 다음의 배관은 수용가가 관리한다.</p> <p>⑤ 한 건물에 여러 업종 또는 동일 업종이 한개의 수전으로 급수되고 있는 경우 또는 한 필지에 건물이 2동 이상 있는 경우 상수도사용자 등이 보조상수도 계량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p>

현행	개정안
<p>제7조(공용 급수장치의 설치 등)</p> <p>① <u>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 급수장치를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u></p> <p>② <u>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u></p>	<p>제7조(공용 급수설비의 설치 등)</p> <p>① ----- -- <u>급수설비의</u>----- -----.</p> <p>② <u>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u> ----- ----- -----.</p>
<p>제8조(공사의 시행)</p> <p>① <u>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시행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시공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에게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시공하게 할 수 있다.</u></p> <p><u><신 설></u></p> <p><u><신 설></u></p> <p>② <u>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중 계량기와 계량기 보호통은 관급자재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u></p> <p>③ <u>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한 공사에 있어서는 군수의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u></p> <p>④ <u>급수공사는 군수가 직접 시공할 경우에는 공사비 납부일로부터 7일이내에, 대행업자 수탁공사의 경우에는 공사 계약 후 3일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 포장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u></p>	<p>제8조(공사의 시행)</p> <p>① ----- -----. <u>다만, 군수가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정하여 공사를 위탁 시공하게 할 수 있다.</u></p> <p>1.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하수도설비 공사업자</p> <p>2. 군수가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이하 “시공업자”라 한다)</p> <p>② <u>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품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급자재의 범위는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u></p> <p>③ <u>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에 있어서는 군수에게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 검사는 하지 않는다.</u></p> <p>④ ----- ----- <u>납부일로부터 7일 내</u>---, <u>시공업자가 시공할</u> ----- ----- <u>3일 내</u>----- ----- ----- <u>그 밖에</u> ----- -----.</p>

현행	개정안
<p>⑤ 수탁받은 대행업자는 착공을 구두 또는 전화로 군수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소요되는 공사용 관급자재를 관급자재 청구서에 의거 군수에게 청구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착공계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p>	<p>⑤ 시공업자는 착공을 군수에게 문서(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로 통보함과 동시에 관급자재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9조(준공검사 등)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대행업자는 준공검사 실시를 구두 또는 전화로 보고하고 준공검사자는 신청자 입회하에 본인확인 및 조건부 승인사항의 이행 사실을 확인한 후에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검사 조서에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p>	<p>제9조(준공검사)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시공업자는 준공검사를 문서로 신청하고, 준공검사자는 신청자 입회 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검사 조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공업자로 하여금 준공검사원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p>
<p>제10조(급수공사 대행업자)</p> <p>①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배관 관련 기능사 2급이상의 자격취득자를 보유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한 건설업종중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소지자로서 미리 군수로부터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을 받은 자로 한다.</p> <p>② (생략)</p>	<p>제10조(급수공사 대행업자)</p> <p>① 제8조제1항제2호의 시공업자는 미리 군수로부터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을 받은 자로 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1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장치 관리)</p> <p>① 공사비용은 당해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 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장치의 수선 또는 철거 공사와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시의 공사비용은 군에서 부담한다. 단, 대지내의 급수장치는 예외로 한다.</p>	<p>제11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p> <p>① 옥외(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로 한다) 시설의 공사비용(옥내시설물의 복구비를 포함한다)은 해당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 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철거공사와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 시의 공사비용은 군에서 부담한다.</p>

현행	개정안
<p>② 급수장치 중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과 상수도 계량기는 신청인의 기부채납에 의하여 군의 소유로 하고, 이의 선량한 관리의무는 상수도 사용자 등이 가진다.</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제12조(공사비의 산출방법)</p> <p>①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준공검사 수수료 및 시공자재검사 수수료의 합계로 한다.</p> <p>② 제1항에 지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p> <p>③ 급수공사비는 정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군수가 별도로 고시한다.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비는 별도의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p>	<p>②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상수도 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에 따라 군의 소유로 한다.</p> <p>③ 주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상수도 사용자가 관리하고, 급수설비 수선비용도 상수도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을 경우에는 건축물 경계까지의 급수설비는 군에서 관리하고, 옥내급수설비의 누수 등에 대하여는 상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p> <p>④ 군수는 설치된 상수도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p> <p>⑤ 원인자 부담으로 설치한 공업용 수도시설의 확장·교체 등에 따른 공사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p> <p>⑥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마을 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포함)를 지방 상수도로 전환할 경우에는 급수공사비를 군에서 부담한다. 다만, 급수시작 후 개인별로 급수 신청할 경우는 제외한다.</p> <p>제12조(공사비의 산출방법)</p> <p>① ----- 도로복구비, 설계 수수료, 준공검사 수수료-----</p> <p>② ----- 외-----</p> <p>③ 급수공사비는 실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설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정액제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군수가 별도로 고시한다.</p>

현행	개정안
<p>제13조(공사비의 선납)</p> <p>① <u>급수공사의 승인을 받은 급수공사 신청자는 급수공사비를 군수가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지정기일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p>② <u>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못할 경우 급수신청자는 1회(15일내)에 한하여 납부기한 연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연기할 수 있다.</u></p> <p>③ <u>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후 과부족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u></p> <p>④ <u>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준공 후 급수 신청자에게 정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수는 대행업자에게는 시공비를 정산하게 하여야 한다.</u></p> <p><신 설></p> <p><신 설></p>	<p>제13조(공사비의 선납)</p> <p>① <u>급수공사 신청자 지정기일 내</u> ----- ----- ----- 인정하여 고시하는 공사는 <u>그렇지 않을 수 있다.</u></p> <p>② <u>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u></p> <p>③ ----- 준공 후 ----- ----- 정산 후 ----- ----- 환급 ----- 하는 ----- 그렇지 않다.</p> <p><삭 제></p> <p>⑤ <u>제3항에 따른 환급금은 상수도 사용자 등의 미납된 상수도요금 및 다음 달의 상수도요금에 충당할 수 있다.</u></p> <p>⑥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대하여는 가정용 수도전의 경우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비를 6개월의 범위 내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p>

현행	개정안
<p>제19조(신고) 상수도사용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급수장치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u>중지</u> 하고자 할 경우 2. 급수장치의 파손, 누수, <u>기타</u> 급수에 이상이 있을 경우 3. <u>급수종별</u>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4. ~ 6. (생략) 7. 가정용과 다른 <u>업종</u>이 <u>공동</u>으로 사용하고, 가정용과 업종을 분할 적용 받고자 할 경우 8. 제23조의 규정에 의해 <u>급수장치</u>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을 경우 9. (생략) <p><신설></p>	<p>제19조(신고) ① ----- ----- <u>있으면</u>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급수설비</u>----- <u>중지 또는 폐전</u> ----- 2. <u>급수설비</u>----- <u>그 밖에</u> --- ----- 3. <u>급수용도</u>를 ----- 4. ~ 6. (현행과 같음) 7. ----- <u>업종을 같이</u> ----- ----- 8. 제23조에 따라 <u>급수설비</u>----- ----- 9. (현행과 같음) <p>② <u>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급수 중단, 용도변경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u></p>
<p>제20조(급수의 판매금지) ① <u>군수는 공설·공용 급수 이외에는 급수를 판매할 수 없다.</u></p> <p>② <u>군수는 공용 급수장치의 급수판매 및 기타 상수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u></p> <p>③ <u>공설·공용 급수장치에 의한 급수 판매 가격 및 관리인 선정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u></p>	<p><삭제></p>

현행	개정안
<p>제21조(소화용 급수의 사용) ① 소화용 급수는 소화용 또는 소방 연습용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평상시는 봉합한다. <단서 신설></p> <p>② 사실 소화용 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군수에게 신고하여 관계직원 입회 하에 사용하되 1회에 10분 이상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p>	<p>제21조(소화용 급수의 사용) ① ----- 외 ----- ----. 다만, 비상급수를 위하여 군수가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p> <p>② ----- ----- <u>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u> ----- ----- -----.</p>
<p>제22조(상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p> <p>① 상수도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장치를 보호 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p> <p>② 상수도사용자 등은 상수도계량기의 매설, 상수도계량기의 설치장소에 물건의 적치, 공작물의 설치 등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상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p> <p>④ 상수도사용자 등은 그의 가족의 행위에 대하여도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조례에 규정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p>	<p>제22조(상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p> <p>① ----- ---- <u>급수설비</u>----- ----- -----.</p> <p>② <u>상수도사용자 등은 상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점검 및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하거나 공작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u></p> <p>③ ----- <u>게을리</u> ----- ----- -----.</p> <p><삭 제></p>

현행	개정안
<p>제23조(급수장치의 권리의무) 급수장치에 관한 권리의무는 당해 급수장치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한다. <u><신설></u></p>	<p>제23조(상수도요금의 정산) ① 급수설비----- 해당 급수설비-----.</p> <p>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가 변동되는 경우 신규 상수도사용자와 기존의 상수도사용자 등은 상수도요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 공매처분에 따른 명의변경 시는 그렇지 않다.</p>
<p>제24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 군수는 재해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상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u><후단 신설></u></p> <p>② (생략)</p> <p>③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상수도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군수는 그 책임을 지지 <u>아니한다.</u></p>	<p>제24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 ----- 그 밖의 ----- 인정하면 -----.</p> <p>----- 이 경우 상수도사용자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제1항에 따른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않는다.</p>
<p>제25조(급수중지와 폐전) ① 상수도사용자 등은 필요에 의하여 군수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급수중지를 한 경우에는 급수장치 손료만 징수한다.</p>	<p>제25조(급수중지와 폐전) ① 상수도사용자 등은 필요에 따라 군수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p>

현행	개정안
<p>② 급수의 중지는 3월 이내로 하되, <u>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거</u>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u>분양되지 아니한 주택(개별 계량을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는 가구)에 대하여는</u> 기간 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u>분양시 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u></p>	<p>② ----- 3개월 내----- ----- 사유가 있으면 신청에 따라 ----- <u>분양되지 않은</u> ----- -----호)----- ----- 분양 시까지 연장한 ----- 본다.</p>
<p>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u>해당할 경우에는 그 급수장치를 폐전할 수 있다.</u></p>	<p>③ ----- <u>해당하면 -- 급수설비</u>-----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수도사용자 등이 <u>3월 이상 소재 불명일 경우</u> 2. <u>정당한 사유없이 3월이상</u> 급수를 받지 <u>아니할 경우</u> 3. <u>제2항에 의한 급수중지 기간을 경과하여도</u> 개전 신청이 없을 경우 4. <u>정호수와 상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서 상수도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u> 5. <u>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장치가 손실되었을 경우</u>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3개월 --- <u>소재가 불명하지 않을</u> --- 2. ----- 3개월 이상 --- --- 않을 --- 3. <u>제2항에 따른</u> ----- ----- 4. <u>지하수</u>----- <u>함께 사용하는</u> ----- ----- 일으킬 연려----- 5. <u>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급수설비의 손실이 예상되거나 손실되었을 경우</u>
<p>④ 제3항제1호, 제2호의 경우 <u>관리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당해 상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u></p>	<p>④ ----- <u>게을리</u> ----- <u>해당</u> -----.</p>

현행	개정안
<p><신 설></p> <p>제27조(요금) ① 요금은 별표 2의 업종별 효율표에 의한 사용요금과 별표 4의 계량기 구경별 급수장치 손료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제3조의 단서 규정에 의한 요금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p> <p>②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업소의 요금은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는 관내 같은 종류 업소의 평균 사용량을 당해 업소의 사용량으로 하여 계량기에 의한 효율표를 적용 요금을 징수한다.</p> <p><신 설></p> <p>제28조(업종의 구분) ① 효율 적용을 위한 업종구분은 별표 3에 의한 업종구분에 의한다. 다만, 업종구분이 불명료하거나 업종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조정할 수 있다.</p>	<p>⑤ 급수설비를 폐전하는 경우에는 분기된 급·배수관에서 완전 폐쇄하여 지하누수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p> <p>제27조(요금) ① ----- ----- 따른 ----- ----- 기본요금 ----- ----- 따른 ----- 관계기관과 따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p> <p>② ----- ----- ----- 해당 ----- 따른 -----.</p> <p>③ 급수 중지 또는 정수처분 중에 있는 급수전에 대하여는 구경별 기본요금을 부과하되, 그 원인이 소멸된 후 최초로 요금을 부과할 때 한꺼번에 조정할 수 있다.</p> <p>제28조(업종의 구분) ① ----- ----- 별표 3의 ----- ----- 따른다. ----- ----- -----.</p>

현행	개정안
<p>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상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업종구분은 높은 효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효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u>심히</u>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u>군수</u>가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p>	<p>② ----- ----- ----- ----- ----- <u>매우</u> ----- -----.</p>
<p>제29조(요금의 조정) ① <u>군수</u>는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의하여 당월분의 사용요금을 조정하며, 급수 중지 및 정수처분 등으로 사용수량이 없는 경우에는 구경별 정액요금을 조정한다.</p>	<p>제29조(요금의 조정) ① <u>군수</u>는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따라 해당 월분의 사용요금을 조정하며, 상수도요금은 월액으로 계산하되, 사용일수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1개월로</p>
<p>② <u>제1항의 규정</u>에 불구하고 <u>군수</u>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u>일괄</u> 계량하여 각각 당해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p>	<p>② <u>제1항에도</u> ----- ----- ----- <u>한꺼번에</u> ----- <u>해당</u> -----.</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u>이내</u>에 계량을 실시하여야 한다.</p>	<p>③ ----- ----- ----- ----- <u>내</u>-----.</p>
<p>④ <u>1가구</u> 또는 1개소 급수로서 동일 업종에 2개 이상의 상수도계량기를 <u>장치</u>하였을 경우에는 상수도사용량을 합산하여 사용요금을 계산한다.</p>	<p>④ <u>1호</u> ----- ----- ----- <u>설치</u>----- -----.</p>

현행	개정안
<p>제30조(사용수량의 인정) 사용수량은 상수도계량기에 의하여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군수가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p> <p>1. ~ 3. (생략)</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제30조(사용수량의 인정) ① ----- ----- 따라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② 단일계량기로 2가구 이상이 가정용 수도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 수로 나눈 평균량에 따라 산정한다.</p> <p>③ 세대구성이 되지 않은 기숙사, 사회복지수용시설 등의 사용량은 거주하는 방 수로 나눈 평균량에 따라 산정한다.</p> <p>④ 단일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사용량 중 가구당 월 15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우선 적용하고, 남은 수량은 다른 업종으로 적용한다.</p>
<p>제31조(상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p> <p>① (생략)</p> <p>② 제1항에 의한 시험결과 오차가 100분의 8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월분의 사용수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의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경우에는 환불, 추징 또는 다음 달분 요금에서 정산한다.</p> <p>③ 제1항에 의한 상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며, 비용 수납은 다음 달 상수도요금 고지서에 상수도요금과 함께 부과 징수한다.</p> <p><단서 신설></p>	<p>제31조(상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 따른 ----- 「계량에 관한 법률」 상의 사용공차 범위를 ----- 그 월분----- ----- 환불----- -----.</p> <p>③ ----- 따른 ----- ----- ----- -----.</p> <p>다만, 시험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군수의 부담으로 한다.</p>

현행	개정안
<p>제32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상수도사용 요금은 매월 검침분을 다음 달 말일까지 징수한다. 다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를 폐전할 <u>경우에 있어서는 수시로 이를 징수할 수 있다.</u></p> <p>② <u>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u>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p>	<p>제32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 ----- ----- <u>급수설비----- 경우에는 -----</u> <u>----- 징수할 -----.</u></p> <p>② <u>제1항에도 불구하고-----</u> ----- -----.</p>
<p>제33조(급수장치 손료) ① 상수도사용자에 대하여는 <u>급수장치 손료를 징수한다.</u> 다만, 공설공용 <u>급수장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u></p> <p>② 제1항의 <u>급수장치 손료는 별표 4에 의하여 매월 상수도요금과 동시에 징수한다.</u></p>	<p>제33조(구경별 기본요금) ① ----- ----- <u>구경별 기본요금 -----.</u> ----- <u>급수설비-----</u> <u>그렇지 않다.</u></p> <p>② ----- <u>구경별 기본요금 -----</u> <u>따라 -----</u> -----.</p>
<p>제34조(가산금) 상수도사용자 등이 상수도 사용 요금과 <u>구경별 정액요금을 납기한</u> 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납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액의 100분의 3에 <u>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u></p>	<p>제34조(가산금) ----- ----- <u>구경별 기본요금-----</u> ----- ----- <u>해당-----.</u></p>
<p>제35조(납부고지) ① 상수도사용 요금은 <u>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u></p> <p>② (생략)</p> <p>③ <u>전월분 미납금에 대하여는 당월분 납부고지서에 미납금을 명시하여 고지할 수 있다.</u></p>	<p>제35조(납부고지) ① ----- ----- <u>따라 -----.</u></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u>지난 달분 미납금에 대하여는 미납액 누계를 해당 월분 납부고지서에 표시하고, 미납금에 대해서는 독촉고지서를 발급한다.</u></p>

현행	개정안
<p>제40조(급수장치의 검사 및 보수) 군수는 상수도 공급에 이상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급수장치, 특수가압시설 또는 흡수정 이하의 장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상수도사용자 등에게 급수장치의 개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p>	<p>제40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p> <p>① 군수는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 급수설비의 상태와 수질을 검사할 수 있고,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도 급수설비 상태와 공급받는 수돗물의 수질 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p> <p>② 검사결과 급수설비가 노후화되었거나 수돗물이 수질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군수는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급수관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용자할 수 있다.</p> <p>③ 제2항에 따라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의 권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출수되는 경우 2.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의 별표 7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배관의 내부가 부식되어 수돗물의 탁도, pH, 색도, 수돗물에 함유된 철, 납, 구리, 아연이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현행	개정안
<p>제41조(급수표시) ① 상수도사용자 등에게는 급수번호를 명기한 급수표지를 교부한다.</p> <p>② 제1항의 급수표지는 급수전이 있는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p>	<p>제41조(급수표지) ① ----- 명확하게 적은 ----- 발급--.</p> <p>② ----- 붙여야 ----.</p>
<p>제42조(급수정지 처분)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p> <p>1. 상수도요금, 수수료, 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서 규정한 징수금을 납기일로부터 2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p> <p>2. ~ 3. (생략)</p> <p>4. 상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상수도요금의 포탈을 도모한 자</p> <p>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용한 자</p> <p>6. (생략)</p> <p>7. 급수정지 처분된 상수도계량기를 무단 사용한 자</p> <p>8. 급수를 남용하거나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급수를 판매한 자</p> <p>9.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태만히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p>	<p>제42조(정수처분) ① ----- 급수를 정지(이하 “정수처분”이라 한다)-----.</p> <p>1. 상수도요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거나, 수수료, 공사비, 그 밖에 이 조례에서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은 자</p> <p>2. ~ 3. (현행과 같음)</p> <p>4. 상수도계량기(설치봉인 포함)----- 상수도요금을 포탈하고자 한 --</p> <p>5. ----- 않고 -----</p> <p>6. (현행과 같음)</p> <p>7. 정수처분-----</p> <p>8. ----- 급수를 판매한 자</p> <p>9. 제19조에 따른 ----- 게을리 ----- 거짓으로 -----</p>

현행	개정안
<p>10. ~ 11. (생략)</p> <p>12. <u>그 밖에 규칙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u></p> <p>② <u>제1항에 의한 급수정지 처분을 해제할 경우에는 급수정지 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u></p> <p><u><신설></u></p> <p>제43조(포상금 지급) <u>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u></p> <p>1.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처분하게 한 공무원 및 민간인 : 과태료 처분금액의 <u>30퍼센트</u></p> <p>2. 창의적인 제안으로 <u>상수도요금 과징 제도 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u> : 1건당 20만원</p> <p><u><신설></u></p> <p><u><신설></u></p>	<p>10. ~ 11. (현행과 같음)</p> <p>12. <u>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한 자</u></p> <p>② <u>제1항에 따른 정수처분----- ----- 정수처분 ----- -----.</u></p> <p>③ <u>정수처분의 해제는 의무자의 신청에 따르되 정수처분의 원인이 끝난 후가 아니면 해제할 수 없다. 다만, 정수처분 해제 후 1개월 내에 원인해소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u></p> <p>제43조(포상금 지급) ① <u>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범위 안-- -----.</u></p> <p>1. ----- ----- ----- <u>100분의 30</u></p> <p>2. ----- <u>상수도 행정</u> ----- -----</p> <p>3. <u>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자</u> : 1건당 3만원에 상응하는 상품권</p> <p>② <u>제1항제1호에 따른 포상금은 해당 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에 따라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u></p>

현행	개정안
<p>제44조(상수도계량기의 훼손·망실 등에 대한 책임) 상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u>당해 상수도사용자 등의 부담으로 한다.</u></p>	<p>제44조(상수도계량기의 훼손·망실 등에 대한 책임) ----- ----- <u>해당 -----부담으로 수리 또는 설치한다.</u></p>
<p>제45조(과태료) 사기, 그 밖에 부정<u>한 수단으로</u>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의 징수를 면탈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탈한 <u>요금을</u> 추징하는 외에 별표 5의 기준에 의한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과한다.</p>	<p>제45조(과태료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u>한 방법</u>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탈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별표 5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감할 수 있다.</p>
<p>제46조(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피자 부담금 산출기준) 「수도법」 제53조 및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피자 부담금 산출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별표 6과 같다.</p>	<p>제46조(상수도시설----- -----) 「수도법」 제71조 및 제7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제6항에 따른 ----- -----.</p>
<p>제47조(급수장치의 철거) ① 군수는 승인을 받지 <u>아니하고</u> 급수장치를 시설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p> <p>② 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 또는 그 밖에 사유로 급수장치가 <u>손실하게</u> 될 경우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u>당해</u>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철거한 급수장치는 군에 귀속한다.</p>	<p>제47조(급수설비-----) ① ----- --- <u>않고</u> 급수설비----- ----- 급수설비----- ---.</p> <p>②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 ----- 급수설비- 손실될 ----- ----- <u>해당</u> 급수설비----- ---.</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 ---- 급수설비-----.</p>

현행	개정안
<p>제48조(상수도계량기 검침 등의 위·수탁) ① <u>군수는 상수도계량기 검침 등의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상수도계량기 검침 및 고지서의 송달 업무를 법인에게 위탁 할 수 있으며, 상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및 체납관리 업무를 수탁처리 할 수 있다.</u></p> <p>② <u>제1항의 법인은 자본금 1,0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u></p> <p>③ <u>제1항의 위탁을 함에 있어서는 수탁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위탁금 및 손해배상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 예치 또는 담보 설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u></p>	<p>제48조(검침업무 등의 위탁) ① <u>군수는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상수도계량기의 검침·교체, 상수도요금 고지서의 발급·송달 업무 등을 위탁 할 수 있다.</u></p> <p>② <u>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지원과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u></p> <p>③ <u>제1항의 위탁에 관한 업무의 범위, 위탁수수료 산정, 업무처리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u></p>
<p>제49조(이의신청) ① <u>상수도요금 및 기타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단서 신설></u></p> <p>② <u>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u></p>	<p>제49조(이의신청) ①----- 그 밖에 ----- ----- ----- <u>90일 내-----</u> ----- ----- <u>. 다만,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u></p> <p>② -----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부터 ----- 내----- -----.</p>

현행	개정안
<p>제50조(지방세 징수예의 준용) 이 조례에 의한 요금, 가산금, 수수료, 과태료, 기타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p> <p><신설></p>	<p>제50조(지방세 징수예의 준용) ----- <u>따른</u> ----- <u>그 밖에 모든</u> ----- ----- <u>외</u>----- ----- <u>따른다.</u></p> <p>제50조의2(소멸시효) 상수도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상수도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p>

[별표 1]

시 설 분 담 금(제14조 관련)

(단위 : 원)

계량기 구경별	분 담 금 액	비 고
13mm	160,000	개조(급수관의 구경확대 공사) 시에는 신·구 구경별 분담금 차액을 징수한다.
20 "	360,000	
25 "	640,000	
32 "	1,000,000	
40 "	1,400,000	
50 "	2,600,000	
75 "	4,000,000	
100 "	9,000,000	
150 "	20,000,000	
200 "	30,000,000	

[별표 2]

업종별 요율표(제27조 관련)

업종구분	사용단계별(m ³)	m ³ 당 단가 (원)
가정용	1 ~ 20	494
	21 ~ 30	642
	31이상	839
일반용	1 ~ 30	607
	31 ~ 50	728
	51 ~ 100	849
	101 ~ 300	971
	301이상	1,092
대중탕용	1 ~ 200	638
	201 ~ 300	766
	301 ~ 500	893
	501이상	1,020
산업용	1m ³ 당	568

[별표 3]

업종구분표(제28조 관련)

업종별	구분내용
가정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1. 가사전용 또는 공용급수전에 의한 가사용 급수2. 담배·연탄·양곡·문방구·지물포·철물 등의 소매업 및 부동산중개업, 인장업, 행정서사업, 수예점, 만화가게, 구멍가게 등으로 10㎡미만의 소규모 가게3.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회복지 수용시설 및 국가유공자 단체
일반용	◦ 타 업종에 속하지 않는 모든 급수
대중탕용	◦ 일반 대중 목욕장업
산업용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체

[별표 4]

구경별 기본요금(제27조 및 제33조 관련)

계량기 구경별	금 액	비 고
13mm	360원	
20 "	490원	
25 "	560원	
32 "	1,090원	
40 "	1,400원	
50 "	2,010원	
75 "	4,560원	
100 "	6,190원	
150 "	10,430원	
200 "	33,390원	

[별표 5]

과태료 처분기준(제45조 관련)

위 반 내 용	과 태 료	
	사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급수시설을 부정사용한 자
1. 급수도용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단, 가정용은 2배)	300,000원
2. 승인을 받지 아니한 급수 공사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단, 가정용은 2배)	300,000원
3. 계량기 작용방해, 훼손, 무단 철거 및 망실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단, 가정용은 2배)	200,000원 (단, 가정용은 100,000원)
4. 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물건 적치, 공작물 설치		100,000원 (단, 가정용은 50,000원)
5. 허가를 받지 아니한 특수가압 시설		200,000원
6. 사설 소화전의 무단사용 또는 봉인파손		100,000원 (단, 가정용은 50,000원)
7. 정수처분 중인 상수도 계량기의 무단개전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단, 가정용은 2배)	100,000원 (단, 가정용은 50,000원)
8. 급수판매 금지		200,000원 (단, 가정용은 50,000원)

[별표 6]

원인자 및 손괴자부담금 산출기준(제46조 관련)

항 목	산 출 기 초
◦수돗물 손실액 및 세척비용	◦ 수량 × 톤당단가 × 200%
◦원상복구비	◦ 설계금액
◦급수차량 사용경비	◦ 운반수량 × 톤당단가 × 200% + 차량임대료
◦동원차량 및 기타 경비	◦ 차량, 중기의 임대료 + 동원인력 출장비 + 기타경비
◦공사 설계비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기준

수압별 누수량 조건표

수압(kg/cm ²)	0.2	0.4	0.6	0.8	1.0	1.2
누수량(m ³ /hr)	1.43×A	2.02×A	2.48×A	2.86×A	3.20×A	3.51×A
수압(kg/cm ²)	1.4	1.6	1.8	2.0	2.2	2.4
누수량(m ³ /hr)	3.79m ³ ×A	4.05×A	4.29×A	4.53×A	4.75×A	4.96×A
수압(kg/cm ²)	2.6	2.8	3.0	3.2	3.4	3.6
누수량(m ³ /hr)	5.16×A	5.36×A	5.54×A	5.72×A	5.90×A	6.07×A
수압(kg/cm ²)	3.8	4.0	4.2	4.4	4.6	4.8
누수량(m ³ /hr)	6.24×A	6.40×A	6.56×A	6.71×A	6.86×A	7.01×A
수압(kg/cm ²)	5.0	6.0	7.0	8.0	9.0	10.0
누수량(m ³ /hr)	7.16×A	7.84×A	8.47×A	9.05×A	9.60×A	10.12×A

※ 산출근거 : $Q = 3.2 \times A \times \sqrt{P}$

(Q : 시간당 누수량(m³/hr), A : 누수부위 면적 (cm²), P : 수압 (kg/cm²)

예) 폭 1mm, 길이 5cm가 파열되고 수압이 3.6kg/cm²이라면

누수부위 면적 A = 0.1 × 5 = 0.5cm²

시간당 누수량 Q = 6.07 × 0.5 = 3.035(m³/hr)

[별지 제1호서식]

상수도요금 감면 신청서

① 신청인	주소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② 수도수전 현황	수용가 번호			
	구경	mm	업종	

「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 제37조제4항에 따라 상수도요금을 감면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 귀하

※ 구비서류 : 시공업자 누수수선 확인서, 누수공사 사진(전·중·후)

관 계 법 령

□ 「수도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1. "원수(원수)"란 음용(음용)·공업용 등으로 제공되는 자연 상태의 물을 말한다. 다만,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어촌용수는 제외한다.
2. "상수원"이란 음용·공업용 등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취수시설(취수시설)을 설치한 지역의 하천·호소(호소)·지하수 등을 말한다.
3. "광역상수원"이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공급되는 상수원을 말한다.
4. "정수(정수)"란 원수를 음용·공업용 등의 용도에 맞게 처리한 물을 말한다.
5. "수도"란 관로(관로), 그 밖의 공작물을 사용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시설의 전부를 말하며, 일반수도·공업용수도 및 전용수도로 구분한다. 다만, 일시적인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은 제외한다.
6. "일반수도"란 광역상수도·지방상수도 및 마을상수도를 말한다.
7. "광역상수도"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수자원공사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원수나 정수를 공급(제43조제4항에 따라 일반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일반수도를 말한다. 이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할 수 있는 광역상수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지방상수도"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지역주민, 인근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주민에게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로서 광역상수도 및 마을상수도 외의 수도를 말한다.
9. "마을상수도"란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도시설에 따라 100명 이상 2천500명 이내의 급수인구에게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로서 1일 공급량이 20세제곱미터 이상 500세제곱미터 미만인 수도 또는 이와 비슷한 규모의 수도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수도를 말한다.
10. "공업용수도"란 공업용수도사업자가 원수 또는 정수를 공업용에 맞게 처리하여 공급하는 수도를 말한다.
11. "전용수도"란 전용상수도와 전용공업용수도를 말한다.

12. "전용상수도"란 100명 이상을 수용하는 기숙사·사택·요양소, 그 밖의 시설에서 사용되는 자가용의 수도와 수도사업에 제공되는 수도 외의 수도로서 100명 이상 5천명 이내의 급수인구(학교·교회 등의 유동인구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수도를 말한다. 다만, 다른 수도에서 공급되는 물만을 상수원으로 하는 것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그 수도 시설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못 미치는 것은 제외한다.
13. "전용공업용수도"란 수도사업에 제공되는 수도 외의 수도로서 원수 또는 정수를 공업용에 맞게 처리하여 사용하는 수도를 말한다. 다만, 다른 수도에서 공급되는 물만을 상수원으로 하는 것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그 수도시설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못 미치는 것은 제외한다.
14. "소규모급수시설"이란 주민이 공동으로 설치·관리하는 급수인구 100명 미만 또는 1일 공급량 20세제곱미터 미만인 급수시설 중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급수시설을 말한다.
17. "수도시설"이란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한 취수(취수)·저수(저수)·도수(도수)·정수(정수)·송수(송수)·배수시설(배수시설), 급수설비, 그 밖에 수도에 관련된 시설을 말한다.
18. "수도사업"이란 일반 수요자 또는 다른 수도사업자에게 수도를 이용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사업을 말하며, 일반수도사업과 공업용수도사업으로 구분한다.
19. "일반수도사업"이란 일반 수요자 또는 다른 수도사업자에게 일반수도를 사용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20. "공업용수도사업"이란 일반 수요자 또는 다른 수도사업자에게 공업용수도를 사용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21. "수도사업자"란 일반수도사업자와 공업용수도사업자를 말한다.
22. "일반수도사업자"란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를 받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23. "공업용수도사업자"란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를 받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24.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 수요자에게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계량기·저수조(저수조)·수도꼭지, 그 밖에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기구)를 말한다.
25. "수도공사"란 수도시설을 신설·증설 또는 개조하는 공사를 말한다.

26. "수도시설관리권"이란 수도시설을 유지·관리하고 그로부터 생산된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받는 자에게서 요금을 징수하는 권리를 말한다.

27. "갱생(갱생)"이란 관(관) 내부의 녹과 이물질 제거 후 코팅 등의 방법으로 통수(통수)기능을 회복하는 것을 말한다.

28. "정수시설운영관리사"란 정수시설의 운영과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제24조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제13조(영리행위 금지 등) ① 누구든지 수돗물을 용기에 넣거나 기구 등으로 다시 처리하여 판매할 수 없다.

②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 기구 등의 철거, 수돗물의 공급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7조(일반수도사업의 인가) ① 일반수도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광역상수도 외의 광역상수도(정수시설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이 인가하는 광역상수도의 정수시설,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마을상수도의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된 사항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벼운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② 환경부장관이나 국토해양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려면 미리 서로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정수시설이 포함된 광역상수도에 관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인가하면 그 정수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③ 환경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인가관청"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을 인가하면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 환경부장관과 국토해양부장관은 매 연도의 일반수도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때에 서로 협의하여 효율적인 사업 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1조(수도시설의 관리) ① 일반수도의 수도시설관리권은 일반수도사업자가 가진다. 다만, 급수설비의 수도시설관리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가진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일반수도사업자는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 급수설비의 상태와 수돗물의 수질을 검사할 수 있다.

③ 일반수도사업에 의하여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는 그 수도사업자에게 급수설비의 상태와 공급받는 수돗물의 수질에 대한 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일반수도사업자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 급수설비가 낡았거나 수돗물이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위반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수도사업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세척·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⑤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에 관한 기술적인 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자를 수도시설관리자로 임명하여야 한다.

제23조(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의 위탁) ①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이하 "수도관리업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일반수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수도관리업무를 위탁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관리업무를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1.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체결 사실

2. 위탁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그 해지 사실

③ 수탁자는 그 수탁을 받은 수도관리업무의 범위에서 제28조·제29조·제32조·제33조제1항 제36조·제37조 및 제61조를 적용하는 경우 일반수도사업자로 본다.

④ 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관리업무를 위탁하면 그 위탁업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자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돗물의 안전하고 적정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38조(공급규정) ① 일반수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돗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그 밖에 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수돗물의 공급을 시작하기 전까지 인가관청(광역상수도의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제65조에서 같다)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39조(급수 의무) ①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물의 공급을 원하는 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공급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일반수도사업자가 부득이한 이유로 일시 수도물을 공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그 구역과 기간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40조(관할 구역 외의 급수) 환경부장관은 일반 수요자의 편익 증진,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에게 그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관할 구역 외의 지역에 물을 공급하게 할 수 있다.

제45조(소화전) 일반수도사업자는 해당 수도에 공공의 소방을 위하여 필요한 소화전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제55조(소규모급수시설)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소규모급수시설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규모급수시설의 개량·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규모급수시설의 설치 및 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8조(요금 등의 강제징수) ① 수도물의 공급을 받은 자가 수도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 또는 제7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40조에 따라 관할 구역 외의 지역에 수도물을 공급한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제1항에 따른 강제징수를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강제징수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에 그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주어야 한다.

제69조(수입금의 사용 제한) 한국수자원공사 외의 수도사업자는 수도사업의 수입금을 수도사업에 관한 비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제70조(수도 설치비용의 부담) 수도(급수설비는 제외한다)의 설치비용은 수도사업자가 부담한다.

제71조(원인자부담금) ①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산업시설 등 수도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 또는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 기준과 징수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2조(손괴자부담금) ① 수도사업자는 수도시설을 손괴(손괴)하는 사업 또는 행위를 하는 자가 있으면 그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수도시설의 수리·유지에 관한 비용이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그 사업자 또는 행위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71조제2항을 준용한다.

□ 「수도법 시행령」

제32조(급수설비의 관리자)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급수설비는 그 설비의 위치와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관리한다.

1.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의 대지경계선 밖에 설치된 급수설비 : 수도사업자
2.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의 대지경계선 안에 설치된 급수설비 : 다음 각 목의 자가.
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
나. 가목의 급수장치 외의 급수설비 :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

제35조(위탁의 구분 및 기간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수도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이하 "수도관리업무"라 한다)의 위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단순위탁 : 취수시설이나 정수시설 중 1개 시설의 수도관리업무 또는 슬러지(정수과정에서 발생하는 침전물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거·처리, 계량기의 점검·교체, 수도요금 고지서의 발급·송달 등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의 위탁
2. 복합위탁 : 수도시설의 개량(대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업무의 위탁 또는 취수시설, 정수시설, 송·배수시설 중 2개 이상 시설의 수도관리업무 위탁. 이 경우 슬러지의 수거·처리 등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를 포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단순위탁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복합위탁의 위탁기간은 5년 이상 20년 이내로 한다.

③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관리업무를 위탁하려는 때에는 그 위탁계약에 위탁 대상 수도시설의 운영·관리의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목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단순위탁

가. 위탁의 목적

나. 위탁의 대상 및 범위

다. 위탁계약기간

라. 위탁대가의 산정 및 지급에 관한 사항

마. 달성목표 및 그 목표 미달 시의 조치에 관한 사항

바. 위탁계약의 해지 및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사. 그 밖에 일반수도사업자가 위탁계약 체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복합위탁

가. 제1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

나. 연차별 투자계획(투자비 명세와 자금조달 방안을 포함한다)과 자금 회수에 관한 사항

다. 수도시설의 개량에 관한 사항

라. 수도요금의 징수·관리 및 단수 등의 대행에 관한 사항

마. 최종 목표연도와 연차별 급수보급률, 유수율 및 수질목표에 관한 사항

바. 위탁성과의 평가 및 그 결과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사. 위탁계약의 체결 및 해지 시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고용승계를 포함한다)

아. 수질사고의 발생 등에 대한 위기관리에 관한 사항

④ 제1항제1호의 단순위탁의 경우에는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위탁의 타당성·필요성의 검토기준, 위탁계약의 체결·해지 및 위기관리 등에 관한 세부기준 등의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6조(수도시설 수탁기관) 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2.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4.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사업자인 법인

5.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2조에 따른 건설부문 상하수도 및 환경 분야와 환경부문 수질관리 분야의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인 법인

6.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건설부문 상하수도 및 환경 분야와 환경부문 수질관리 분야의 기술사사무소

7. 수도관리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8. 지방자치단체인 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관리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수도사업자의 경우는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자(단순위탁 중 슬러지의 수거·처리 등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37조(위탁계획서의 작성 및 의견 수렴 등) ① 일반수도사업자(지방자치단체인 일반수도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에서 같다)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수도관리업무를 위탁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위탁계획서를 작성하여 제38조에 따른 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탁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은 후 2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38조(위탁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일반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탁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39조(위탁성과의 평가) ① 일반수도사업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수도관리업무를 위탁하였으면 위탁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5년마다 수탁자의 시설의 운영·관리 및 경영성과 등을 평가하여 수도관리업무를 개선·발전시켜야 한다.

제65조(원인자부담금) ① 수도사업자는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면 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과 납부방법 등에 대하여 이를 부담할 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그 부담금액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1.3>

② 수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면 수도공사 등에 드는 비용을 산출하여 그 금액·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납입고지서에 적어 부담금을 낼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1.3>

③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수도시설의 신설·증설 비용

2.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드는 공사비

3. 수도시설의 세척 등으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의 요금에 상당하는 금액

4. 단수(단수)로 인한 급수차 사용경비
5. 도로복구비와 도로결빙 방지비용
6. 복구작업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의 경비
7. 그 밖에 홍보에 든 경비 등

④ 수도사업자는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면 수도시설의 수선과 유지에 관한 비용이나 손괴 예방을 위한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산출하여 부담금의 금액·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납입고지서에 적어 부담금을 낼 자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08.1.3>

⑤ 제4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8.1.3>

1. 수도시설의 손괴 등으로 인하여 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의 요금에 상당하는 금액
2. 제3항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용

⑥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비용의 산출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1.3>

제66조 삭제 <2008.1.3>

□ 「수도법 시행규칙」

제11조(급수설비의 소유자 등에 대한 권고조치)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급수설비의 세척·갱생·교체 등 권고조치의 대상과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3조(급수관의 상태검사 및 조치 등) ①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영 제51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그 건축물 또는 시설의 준공검사 후 5년이 지난 날부터 1년 주기로 급수관의 상태에 대하여 별표 7에 따른 일반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등은 제1항에 따라 일반검사를 실시한 결과 검사항목 중 탁도, 수소이온 농도, 색도 또는 철에 대한 검사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급수관을 세척(급수관 내부의 이물질이나 미생물막 등을 관에 손상을 주지 아니하면서 물이나 공기를 주입하는 방법 등으로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관이 아연도강관인 경우에는 검사항목 중 검사기준을 초과하는 항목이 한 개 이상 있으면 반드시 이를 갱생하거나 교체하여야 한다.

③ 소유자등은 제1항에 따른 일반검사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별표 7에 따른 전문검사를 하고, 급수관을 갱생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검사 결과 갱생만으로는 내구성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노후한 급수관은 새 급수관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1. 일반검사의 검사항목에 대한 검사기준을 3년 연속 초과하는 경우

2. 일반검사의 검사항목 중 납·구리 또는 아연에 대한 검사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④ 소유자등은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른 세척·갱생·교체 등의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일반수도사업자에게 보고하고, 그와 관련된 자료를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별표 7] <개정 2007.12.26>

급수설비 상태검사의 구분 및 방법(제23조 관련)

1. 일반검사

분 류	항 목	검 사 방 법
기초조사	준공연도, 배관도면	관련 도면·서류·현지조사 등을 병행한다.
	관중, 관경, 배관길이	관련 도면·서류·현지조사 등을 병행한다.
	문제점 조사	- 출수불량, 녹물 등 수질불량 등을 조사한다. - 누수, 밸브 작동 상태 등 조사한다. - 이용 주민으로부터의 탐문조사 등을 활용한다.
급수관내 정체수 수질검사	시료 채취 방법	건물 내 임의의 냉수 수도꼭지 하나 이상에서 최소 6시간 이상 잠가 두었던 수도꼭지를 튼 직후 물 1리터를 채취한다.
	검사 항목 및 기준	- 탁도: 1NTU 이하 - 수소이온농도: 5.8 이상 8.5 이하 - 색도: 5도 이하 - 철: 0.3mg/ℓ 이하 - 납: 0.05mg/ℓ 이하 - 구리: 1mg/ℓ 이하 - 아연: 3mg/L 이하

2. 전문검사

분 류	항 목	검 사 방 법
현장 조사	수압 측정	가장 높은 층의 냉수 수도꼭지를 하나 이상 측정(화장실의 수도꼭지를 표본으로 측정한다)하되, 건물이 여러 동일 경우에는 각 동마다 측정한다.
	내시경 관찰	단수시킨 후 지하저수조 급수배관, 입상관(立上管), 건물 내 임의의 냉수 수도꼭지를 하나 이상 분리하여 내시경을 이용하여 진단한다.
	초음파 두께 측정	건물 안의 임의의 냉수 수도꼭지 하나 이상에서 스케일 두께를 측정한다.
	유속	건물 안의 가장 높은 층의 냉수 수도꼭지 하나 이상에서 유속을 측정한다.
	유량	건물 안의 가장 높은 층의 냉수 수도꼭지 하나 이상에서 유량을 측정한다.
	외부 부식 관찰	계량기 등에 연결된 급수 및 온수 배관, 밸브류 등의 외부 부식 상태를 관찰하여 검사한다.

비 고

- 제1호의 일반검사 중 급수관 내 정체수 수질검사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수질검사신청서를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라 지정된 수질검사기관에 제출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2호의 전문검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기계설비공사업으로 등록된 업체 또는 환경부장관이 전문검사를 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업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 등) 법 제8조에 따른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7.12.28>

제30조(하자담보책임기간)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1] <개정 2007.12.28>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제7조 관련)

구분	건설업종	업무내용	건설공사의 예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10. 기계설비공사업	건축물·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위생·냉난방·공기조화·기계기구·배관설비 등을 조립·설치하는 공사	건축물 등 시설물에 설치하는 급배수·환기·공기조화·냉난방·급탕·주방·위생·방음·방진·전자파차단설비공사, 플랜트안의 배관·기계기구설치공사, 기계설비를 자동제어하기 위한 제어기기·지능형제어시스템·자동원격검침설비 등의 자동제어공사, 시스템에어컨(GHP·EHP)공사, 지열냉·난방 기기설치 및 배관공사, 보온·보냉 등 열절연공사, 옥내급배수관개량·세척공사, 무대기계장치공사, 자동창고설비공사, 냉동냉장설비공사, 집진기공사, 철도기계신호공사, 건널목차단기공사 등
	11.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상수도설비공사: 상수도, 농·공업용수도 등을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상수도관, 농·공업용수도관을 부설하는 공사 ·하수도설비공사: 하수 등을 처리하기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하수관을 부설하는 공사	취수·정수·송배수를 위한 기기설치공사, 상수도, 농·공업용수도 등의 용수관 설치공사(옥내급배수설비공사를 제외한다), 관세척 및 갱생공사, 각종 변류이형관설치공사, 옥외스프링클러설치공사 등 하수 등의 처리를 위한 기기설치공사, 하수·우수관 부설(옥내급배수설비공사를 제외한다) 및 세척·갱생공사 등

□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건설업의 종류) ① 건설업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여야 하는 건설업은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건설업의 종류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나눈다. [전문개정 2007.5.17]

제28조(건설공사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①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목적물이 벽돌쌓기식구조·철근콘크리트구조·철골구조·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된 것인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완공일부터 10년의 범위내에서, 기타 구조로 된 것인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완공일부터 5년의 범위내에서 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

② 수급인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담보책임이 없다.

1.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품질이나 규격등의 기준미달로 인한 경우
2.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경우
3.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목적물을 관계법령에 의한 내구연한 또는 설계상의 구조내력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③ 건설공사에 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민법」 제670조 및 동법 제671조를 제외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도급계약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나 도급계약이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07.5.17>

□ 「지방자치법」

제136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37조(수수료)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법령에 달리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8조(분담금)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주민의 일부가 특히 이익을 받으면 이익을 받는 자로부터 그 이익의 범위에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과태료 처분에 관한 절차에 관하여는 제140조를 준용한다.

제140조(사용료 등의 부과·징수, 이의신청)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은 공평한 방법으로 부과하거나 징수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③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부과나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결정하여 알려야 한다.

⑤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부과나 징수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제4항에 따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하면 제5항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⑦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73조와 제75조부터 제7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지방공기업법」

제22조(요금)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의 급부에 대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1992·1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은 적정하여야 하고, 지역간 요금수준의 형평을 기하여야 하며, 이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직영기업이 제공한 급부의 원가를 보상함과 아울러 기업으로서 계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80·1·4, 1992·12·8>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의 산정방식은 영업비용 및 자본비용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2.3.25>

④ 요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 「거창군 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 지명규칙」

제3조(지정신청)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갖추어 군수의 대행업 지정을 받아야 한다.

1.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 신청서(별표 제4호 서식)
2. 이력서
3. 종업원 신고서(별표 제7호 서식)
4. 재산증명서
5. 공사용 기계공구 명세서
6. 국 지방세 완납증명서
7. 「건설업법」에 의한 상·하수도 설비전문공사 면허증사본

제4조(지정기준) ① 대행업의 지정기준은 별표 제1호의 지정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 소지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전항의 시공 기술자는 군수가 시행하는 상수도 기술자 자격검정 시험에 합격한 기술자로서 거창군 관내에 거주하는 자라야 한다.

□ 「계량에 관한 법률」

제10조(사용 등의 제한) 계량기가 아닌 것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량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정계량에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9조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대여·진열·보관 등이 제한되는 것
2.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정을 받지 아니한 것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용공차(사용공차)를 초과하는 것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사용공차) 법 제10조제3호에 따른 계량기별 사용공차의 범위는 별표 7과 같다.

[별표 7]

계량기별 사용공차의 범위(제15조관련)

1. 다음 각 목의 계량기는 법 제20조에서 규정하는 당해 계량기의 검정기준에서 정하는 기기오차(이하 이 표에서 "사용공차"라 한다)와 같은 값으로 한다.
 - 가. 분동(등급 E₁을 제외한다)
 - 나. 속도측정기
 - 다. 체온계
 - 라. 혈압계
2. 다음 각 목의 계량기는 법 제20조에서 규정하는 당해 계량기의 각 사용공차의 1.5배의 값으로 한다.
 - 가. 오일미터(호칭지름이 100mm 이하인 것에 한한다)
 - 나. 주유기(선박용 및 항공기용을 제외한다)
 - 다. LPG 미터(자동차 주유용으로서 호칭지름이 40mm 이하인 것에 한한다)
 - 라. 눈새김 탱크로리(유류거래용에 한한다)
 - 마. 전력량계
 - 바. 곡물수분측정기
3. 다음 각 목의 계량기는 법 제20조에서 규정하는 당해 계량기의 각 사용공차의 2배의 값으로 한다.
 - 가. 판수동 저울(정량증추를 포함한다)
 - 나. 접시저시 및 판저시 저울
 - 다. 전기식저시 저울(최소눈금값이 1mg 미만인 것, 검정 눈금수가 100 미만 또는 200,000 초과인 것을 제외한다)
 - 라. 이동식 측정기
 - 마. 가스미터(최대유량이 1,000m³/h 이하인 것에 한한다)
 - 바. 수도미터(온수미터를 포함하며, 호칭지름이 350mm 이하인 것에 한한다)
 - 사. 눈새김 탱크(유류거래용에 한한다)
 - 아. 적산열량계(호칭지름이 350mm 이하인 것으로서 열매체가 액체인 것에 한한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①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③ 당사자는 행정청으로부터 제21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행정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다.

□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채권 및 소유권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개정 1997.12.13>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①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것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도 제1항과 같다.

□ 「지방세법」

제30조의5(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이하 이 절에서 "지방세징수권"이라 한다)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이 경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오납으로 인하여 생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청구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③ 지방세징수권의 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 <개정 2005.12.31> [본조신설 1994.12.22]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공사계약의 하자담보책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민법」 제671조에서 규정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21조(하자보수보증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도급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는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 외에 제조·수리·가공·구매·용역 등의 계약에 있어서 당해 계약의 성질상 하자보수보증금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의 금액·납부시기·납부방법·예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5조제3항의 규정은 하자보수보증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당해 하자의 보수를 위한 예산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그 하자보수보증금을 당해 하자의 보수를 위하여 직접 사용할 수 있다.

⑤ 제4항 단서의 경우 그 사용잔액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공사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당해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는 연차계약별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한다. 다만,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공사인 경우에는 제1차계약을 체결할 때에 총공사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제71조 (하자보수보증금) ①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2이상 100분의 10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당해 공사의 준공검사 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납부하게 하고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③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는 연차계약별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공사인 경우에는 총공사의 준공검사 후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④ 법 제2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5조제7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제37조제3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⑤ 제37조제2항·제4항 및 제38조의 규정은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 및 지방자치단체 세입조치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